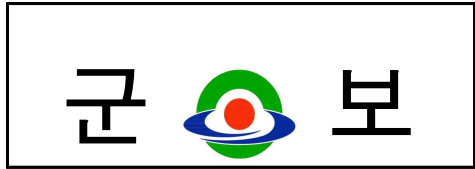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57호 2024. 9. 23.(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364호)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365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4-1378호)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 공고(예천군곤충연구소 공고 제2024-16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구역 범위 정비(안 제5조)

- 「학교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절대 정화구역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pulp409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3) 팩스 : 054-650-80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보건소(전화: 054-650-80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학교보건법」 제3조제1항에 <u>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u> <u>중 학교절대 정화구역</u>	<u><삭 제></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생략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예 천 군 수



1. 시행규칙명 :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구역별 경계 범위 정비(안 제2조)
 - 학교절대 정화구역 경계표시 삭제
 -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보도
→ 버스정류소(택시승차장)로부터 5미터 이내 보도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pulp409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3) 팩스 : 054-650-80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보건소(전화: 054-650-80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를 “(택시승차장)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 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 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 터 이내로 한다.</u>	<u><삭 제></u>
3. 버스정류소(<u>택시승차대</u>)는 <u>표지판</u> 으로부터 5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3. -----(<u>택시승차장</u>)으로부터 -----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생략

예천군 공고 제2024-1378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제한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예 천 군 수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소로1-1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차량	구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일원 (용궁교~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용궁역 사거리) L=1.21km
기간	2024년 9월 23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유 ○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우수관로 정비)의 원활한 작업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			
그 밖의 사항 ○ 공사구간별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결정(붙임 참조)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붙임

통행의 제한 및 우회노선 지정

1. 제한도로 : 도시계획도로(소로1-1)
2. 제한구간 : 용궁면 용궁로 일원(용궁교~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용궁역 사거리)
3. 제한대상 : 차량
4. 제한기간 : 2024년 9월 23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
5. 제한이유 :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작업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
6. 통제방법(붙임 구간별 공사구간 참조)
 - 도로 부분통제 : 1,2,6차 구간
 - 도로 전면통제 : 3,4,5차 구간
- ※ 통제기간 중에도 일일작업종료 후 제한적 통행가능
7. 전면통제구간(3~5구간)



8. 구간별 공사구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650-6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 공고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화특구 변경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1. 특구 개요(당초)

- 특구명칭 : 예천 곤충산업특구
- 특구위치 :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일원
- 특구면적 : 243,836m²
- 사업기간 : 2009년 ~ 2023년
- 사 업 비 : 572.9억원
- 특화사업 : 4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
 - 곤충생태 관찰체험지구 조성사업(세부사업 2개)
 - 산업곤충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세부사업 3개)
 - 산업곤충 소득자원화 사업(세부사업 4개)
 - 곤충관광자원화 사업(세부사업 4개)
- 특화사업자/주소 : 예천군수 김학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특화사업기간 : 2009년 ~ 2023년
- 규제특례 : 4개
 - 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 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2. 변경 계획

- 사업기간 : (당초)2009년~2023년 → (변경) 2009년~2026년(3년 연장)
- 사 업 비 : (당초)572.9억원 → (변경) 867.9억원
- 특화사업 : (당초)특화사업(4), 세부사업(13) → (변경) 특화사업(4), 세부사업(14)

3. 관계서류 :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계획 열람장소 비치

4.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기간 : 2024. 9. 30. ~ 10. 14.(15일간)
- 열람장소 : 예천군곤충연구소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 기간 내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의견서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곤충연구소(☎054-650-6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공고명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견 제출 내용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